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되고 대규모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며 공시토록 의무화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령 개정안을 2000년 2월 9일부터 2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다.

동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업구조조정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출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채무보증금지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채무보증금지의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였다. 그리고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

사회 의결 및 공시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내부거래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의 순위가 1위부터 10부터까지인 기업집단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하는 대규모내부거래의 규모를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내부거래로 규정하였다. 또 대규모기업지단 지정 후 계열사 감축 등으로 자산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30위 집단 자산총액의 70% 이하로 되는 경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앞으로 개정내용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계열분리 및 친족독립회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분리 및 친족독립회사(이하 “계열분리회사 등”이라 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3일간 현대, 삼성 등 8개의 대규모기업집단 및 동 기업집단들의 계열분리회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3개

지원업체가 23개 수혜업체 및 5명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총 1조 786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지원성 거래를 통하여 수혜업체들이 순수하게 지원받은 금액(실제거래 가격-정상거래가격)은 총 124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들에 대하여 당해행위

(단위 : 억원)

구 분	모기업집단→ 계열분리회사	계열분리회사↔ 계열분리회사	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모기업집단→ 특수관계인
지 원 성 거래규모	4,459	2,038	4,270	19

의 중지, 법위반 사실의 신문공론(2002. 7. 21)  
개사에 총 7,51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위의 금번 조치로 친족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지원해주는 전근대적인 기업경영행태를 개선함으로써 계열분리회사의 독립경영을 유도하고, 일반기업들이 대규모기업집단의 친족회사들과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며,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모기업집단의 핵심역량 누출을 방지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부당내부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 모기업집단은 소속 계열회사들을 지원하는 방

- 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열분리회사들을 지원
- 계열분리회사에게 선금금 명목으로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거나, 저리로 자금을 대여
- 금융기관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열분리회사의 기업어음을 저리매입하도록 하여 지원
- 금융기관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해주고

동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열분리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저리매입하도록 하여 지원  
· 계열분리회사의 기업어음을 저리 매입

#### ■ 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간에도 부실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방법이 날로 지능화

- 계열금융기관 및 비계열금융기관을 이중으로 경유하여 계열회사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
- 퇴출대상으로 확정된 계열회사를 합병시 결과적으로 동회사의 주주인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이 혜택을 받게되는 사례 발생

#### ■ 계열분리회사들 상호간에도 우량한 회사가 부실회사를 지원하는 등 부당지원행위가 상당히 존재

- 선급금 명목의 무이자대여
-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여 계열사의 차입을 지원
- 기업어음 저리매입
- 자사 발행어음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고 계열회사는 동 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

### 기업집단별 부당내부거래 규모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지원업체 수		수혜업체 수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금액
	그룹사	친족회사	그룹사	친족회사		
현대	3	3	-	6	430,800	5,695
삼성	1	1	-	2	27,000	627
LG	2	-	1(5)	3	12,898	623
SK	1	1	-	2	90,330	1,066
쌍용	-	-	-	-	-	-
한화	4	1	1	2	147,300	1,978
금호	2	1	2	1	186,005	500
롯데	2	1	1	2	184,300	1,943
계	15	8	5(5)	18	1,078,633	12,432

\* ( )는 특수관계인의 수를 의미함

## 기업집단별 과징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分		감면전 과징금액	구조조정 감면액	최종 과징금액
현대	현대그룹	3,580		3,580
	금강그룹(친족)	182		182
	성우그룹(친족)	195	85	109
	계	3,957	85	3,871
삼성	삼성그룹	321		321
	신세계백화점(친족)	118		118
	계	439		439
LG		435	272	163
SK	SK그룹	98		98
	에스케이엠(친족)	648		648
	계	746		746
한화	한화그룹	1,163	506	657
	빙그레(친족)	219		219
	계	1,382	506	876
금호	금호그룹	189	142	47
	금동조명(친족)	11		11
	계	200	142	58
롯데	롯데그룹	688		688
	(주)농심(친족)	670		670
	계	1,358		1,358
합 계		8,516	1,005	7,511

## 기업집단별 부당지원 내용

## 현대

## ■ 지원행위 유형별

(단위 : 백만원)

지원행위	지원주체	지원객체	지원성거래규모	지원금액
1) 선급금명목의 무이자자금대여	현대자동차	성우정공*	15,400	3,873
2) 저리자금대여	현대기업금융	동서관광개발*	299,600	429
3) 기업어음고가매입	현대투신운용 등 4개사	동서산업* 등 4개사	115,800	1,393
계			430,800	5,695

\* 는 현대그룹의 계열분리회사임

## ■ 지원주체 및 객체별 종합

(단위 : 백만원)

지 원 주 체		지 원 객 체	
회 사 명	지원금액	회 사 명	지원받은 금액
현대자동차	3,873	성우정공*	3,873
현대기업금융	429	동서관광개발*	429
현대투신운용	852	동서산업*	689
금강개발산업*	215	주리원*	425
울산방송*	47	성우종합건설*	157
현대시멘트*	279	성우레저산업*	122
계	5,695		5,695

\* 는 현대그룹의 계열분리회사임

## 삼성

## ■ 지원행위 유형별

(단위 : 백만원)

지원행위	지원주체	지원객체	지원성거래규모	지원금액
1) 저리대출	삼성생명	신세계백화점*	12,000	458
2) 기업어음고가매입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인터넷내셔널*	15,000	169
계			27,000	627

\* 는 삼성그룹의 계열분리회사임

## ■ 지원주체 및 객체별 종합

(단위 : 백만원)

지원주체		지원객체	
회사명	지원금액	회사명	지원받은 금액
삼성생명	458	신세계백화점*	458
신세계백화점*	169	신세계인터내셔날*	169
계	627		627

\* 는 삼성그룹의 계열분리회사임

## L G

## ■ 지원행위 유형별

(단위 : 백만원)

지원행위	지원주체	지원객체	지원성거래규모	지원금액
1) 기업어음 우회매입	LG정보통신	희성화학* 등 3개사	9,000	234
2) 합병시 괴합병주주 지원	LG건설(구 LG엔지니어링)	LG건설, 특수관계인	3,898	389
	계		12,898	623

\* 는 LG그룹의 계열분리회사임

## ■ 지원주체 및 객체별 종합

(단위 : 백만원)

지원주체		지원객체	
회사명	지원금액	회사명	지원받은 금액
LG정보통신	234	희성화학*	161
		희성금속*	54
		희성전선*	19
LG건설 (구 LG엔지니어링)	389	LG건설*	195
		특수관계인	194
계	623		623

\* 는 LG그룹의 계열분리회사임

## S K

## ■ 지원행위 유형별

(단위 : 백만원)

지원행위	지원주체	지원객체	지원성거래규모	지원금액
1) 기업어음 고가매입	SK씨엔씨	SKM*	44,070	140
2) 자금우회처리대출 및 대여	SKM*	동산씨엔지*	46,260	926
	계		90,330	1,066

\* 는 SK그룹의 계열분리회사, #는 에스케이엠의 자회사

## ■ 지원주체 및 객체별 종합

(단위 : 백만원)

지 원 주 체		지 원 객 체	
회 사 명	지 원 금 액	회 사 명	지 원 받 은 금 액
SK씨엔씨	140	SKM*	140
SKM*	926	동산씨엔지*	926
계	1,066		1,066

\* 는 SK그룹의 계열분리회사, #는 에스케이엠의 자회사

## 한 화

## ■ 지원행위 유형별

(단위 : 백만원)

지원행위	지원주체	지원객체	지원성거래규모	지원금액
1) 대여금의 저리대여	한화석유화학 등 3개사	(주)빙그레*	40,800	1,006
2) 융통어음의 고가매입	한화석유화학	한화파이낸스	98,400	637
3) 자금의 저리대여	경인해운	한화파이낸스	4,750	21
4) 선금금명목의 무이자 대여	빙그레	키스크	3,350	314
계			147,300	1,978

\* 는 한화그룹의 계열분리회사임

## ■ 지원주체 및 객체별 종합

(단위 : 백만원)

지 원 주 체		지 원 객 체	
회 사 명	지 원 금 액	회 사 명	지 원 받 은 금 액
한화석유화학	760	(주)빙그레*	1,006
한화	159	한화파이낸스	658
인천정유	724		
경인해운	21		
빙그레	314	키스크	314
계	1,978		1,978

\* 는 한화그룹의 계열분리회사임

## 금 오

## ■ 지원행위 유형별

(단위 : 백만원)

지원행위	지원주체	지원객체	지원성거래규모	지원금액
1) 기업어음 고가매입	금호종합금융	금호산업	176,500	203
2) 어음제공	금동조명*	금호전기*	7,118	59
3) 유상증자참여	금호석유화학	금호종합금융*	2,387	238
계			186,005	500

\* 는 금호그룹의 계열분리회사임

## ■ 지원주체 및 객체별 종합

(단위 : 백만원)

지 원 주 체		지 원 객 체	
회 사 명	지원금액	회 사 명	지원받은 금액
금호종합금융	203	금호산업	203
금동조명	59	금호전기*	59
금호석유화학*	238	금호종합금융	238
계	500		500

\* 는 금호그룹의 계열분리회사임

## 롯 대

## ■ 지원행위 유형별

(단위 : 백만원)

지원행위	지원주체	지원객체	지원성거래규모	지원금액
1) 기업어음 고가매입	롯데역사 등 3개사	롯데역사 등 2개사	159,000	1,093
2) 보험예치를 통한 지원	(주)농심*	(주)농심가*	25,300	850
계			184,300	1,943

\* 는 롯데그룹의 계열분리회사임

## ■ 지원주체 및 객체별 종합

(단위 : 백만원)

지 원 주 체		지 원 객 체	
회 사 명	지원금액	회 사 명	지원받은 금액
롯데역사	944	롯데리아	985
호남석유화학	41	율촌화학*	108
농심*	958	농심가*	850
계	1,943		1,943

\* 는 롯데그룹의 계열분리회사임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영업중인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의 상당수가 거래약관이 없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다수인 설정을 감안하여 급증추세에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전자상거래연구조합 등이 심사·청구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일명 “인터넷사이버몰이용표준약관”)을 지난 1월 28일 승인하였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전자상거래는 그 속성상 사업자와 소비자가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구매를 돋고 소비자 피해 분쟁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그 약관에는 계약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현재 인터넷상의 쇼핑몰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쇼핑몰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간에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약관의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 특히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 이외에 배송, 대금지불수단, 청약철회권,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여부 등을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은 물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적용되므로 동 표준약관의 제정에도 동 법령의 내용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실무사항을 고려하였다.

동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①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고 사이버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 ‘몰’의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함

- ② 빈번한 약관개정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약관 개정시 적용일지를 명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만 원칙적으로 적용함
- ③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출 의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금지 의무 등을 규정
- ④ 이용자가 물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때에는 관련 법에 의해 제재하는 동시에 회원자격을 상실도록 함
- ⑤ 사업자 운영의 피해보상처리기구 외에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 규정을 약관에 반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조정 등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함

## ■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 ① 사이버몰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 또는 종단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 다만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물질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그리하지 아니함
- ② 기술상의 실수 등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몰에 대하여 수신확인 통지의 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후 자체없이 주문변경 및 주문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③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의 배송수단, 배송비용 부담, 배송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물이 고의·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

## 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④ 통신판매에 있어서 선불식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과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사이버몰 거래에 적용하여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정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물 품을 인도 받은 후 20일 이내 이용자는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함
- 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이버몰 운영자가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구체적인 노력의무를 부여할 것과 신용카드·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 유출, 변조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당사자간에 대면 접촉없이 전자적 매체를 통해 계약체결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규범 설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금번 표준약관 마련은 거래의 효율화 도모 및 사업자의 신뢰제고로 소비자 피해 분쟁의 사전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사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거래의 안정 및 신뢰성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표준약관 사용 표시(마크) 부여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1차적으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마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인터넷 사이버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공정위 소비자 종합홈페이지상에 표준약관(마크) 사용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정보 및 사이버거래 모범사업자 관련 정보 등을 저장,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불공정약관의 사용 및 기타 법위반 사이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사이트를 직권조사(검색)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전자상거래업자는 필요시 공정위 소비자 종합홈페이지를 통해 표준약관 내용이 바로 링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예: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홈페이지(초기화면)

\* 당 쇼핑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음  
(표준약관 내용을 확인 하실 분은 클릭하십시오)

**클릭 – 예 : 공정위소비자 종합홈페이지**

\* 본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표준약관임

### ◆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

구 분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약관의 명시 및 개정·변경 등	※ 상당수 업체들 경우 약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찾기가 곤란하며, 회원가입 신청 전에 이용자가 약관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의 초기화면(전면)에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약관내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li> <li>• “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li> </ul>

구 분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p>물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제3조)</li> </ul>
계약(회원가입 및 구매)의 성립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쇼핑몰 회원에 가입 및 쇼핑몰에서 제품구매를 하는 것은 본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서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li> <li>회원가입 양식에 소정의 정보 입력만으로 약관동의 및 회원가입 완료되는 것으로 봅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몰의 승낙이 수신확인 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회원가입 및 구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li> <li>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3항, 제10조제2항)</li> </ul>
회원의 자격 상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쇼핑몰은 다음 각호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몰”이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li> <li>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제7조)</li> </ul>
서비스 변경·중단 등에 대한 물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쇼핑몰은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교체, 고장,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li> <li>쇼핑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몰”은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몰”에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li> <li>“몰”은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4조, 제5조)</li> </ul>
배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송은 2~7일 이내 배송되며 이는 주문과 결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li> <li>배송료는 고객이 부담하셔야 하며 3만원 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 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的 고의·</li> </ul>

구 분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상 구입시 국내에 한하여 무료로 하며 해외 배송의 경우 고객이 추가로 배송료를 부담 하셔야 합니다.	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제 13조)
청약철회(환급 · 반품 ·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일로부터 5일/7일/10일/15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하자 상품의 이의제기는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교환만 가능”, “개봉된 상품은 반품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몰”은 배송된 재화일 지라도 재화를 반품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을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제14조)</li> </ul> <p>* 다음 각호는 방문판매법상의 통신판매규정 적용</p>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각종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li> <li>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등의 책임은 개인정보관리자나 해당 담당자가 집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몰”은 이용자의 정보 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li> <li>“몰”이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li> <li>“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여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제 15조)</li> </ul>
연결 “몰”과 피연결 “몰” 간의 관계	“몰”은 자신의 사이트에 연결된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결 “몰”은 피연결 “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 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몰’의 사이트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19조)
지적소유권 의 보호	“규 정 없 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몰”에 귀속합니다.</li> <li>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몰”的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배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제20조)</li> </ul>
재판관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약관과 관련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li> </ul>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제22조)

## 『소비자 종합 홈페이지』 개설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소비자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로서 『소비자 종합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동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원 등 여러 기관에서 생산되는 자료나 정보 중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 고발 등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코너도 함께 개설하여, 정부와 소비자간 연결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업종이나 분야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공정위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소비자보호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정보분류체계 및 제공대상 정보 예시〉

분 류		제공대상 정보
업종별 분류	건강	■ 각종 보도자료, 교육자료, 피해예방 및 구제방법, 시험검사결과 등
	금융 및 보험	■ 관련 법령 및 고시 등
	도·소매/프랜차이즈	■ 기타 소비자 관련 정보
	부동산	
	상품 및 서비스	
	교통·통신·여행	
	전자거래	
	기타	

이미 공정위가 www.consumer.go.kr로 등록한 동 홈페이지의 개설 계획은 포괄적 정보의 수집 및 분류, 정보의 재가공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는데, 우선 1단계로 금년 6월말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정위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단계로 2000년말까지 정부부처를 포함한 주요 소비자보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3단계로는 2001년 6월말 까지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재가공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종합적인 소비자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동 홈페이지의 개설로 소비자는 소관기관이 어디인지,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등을 알지 못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one-stop) 검색으로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소비자의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시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기업간의 경쟁도 보다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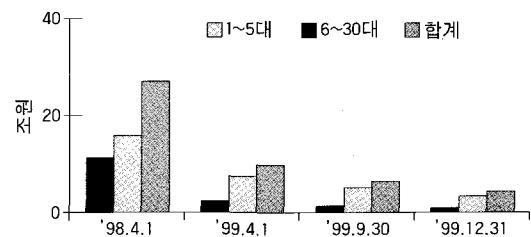
## '99년말 30대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3월말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 해소시한의 종료에 앞서 '99년말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실적을 발표하였다.

'99년 12월말 현재 채무보증제한대상 금액은 4.3조원 수준으로 '99년 4월 1일에 비해 5.5조원 ('99년 9월말 대비 2.1조원) 감소하였다. '98년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2001년 3월 해소시한이 종료되는 4개 집단(새한, 강원산업, 제일제당, 삼양)을 제외하면 4조원 수준이다. 4/4분기 중 해소액은 2.1조원으로 3/4분기중 해소액 1.3조원에 비해 해소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해소시한이 얼마남지 않은데다 4/4분기중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복·과다보증 등 불합리한 채무보증을 조기해지도록 유도한데 따른 것이다.

5대 기업집단의 경우 「대우」를 제외한 4개 집단의 채무보증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LG, SK의 경우 완전 해소되었고, 현대는 602억원, 삼성은 1,275억원이 남았으며, 「대우」관련 보증(약 6,800억원)의 경우 워크아웃 약정상 채무보증 이행청구권을 소멸키로 되어 있어 2000년 1월 대부분 해소되었다. 반면, 6대 이하 일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해소실적이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일부 부실기업집단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한내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01년 3월 해소기한이 종료되는 4개 집단과

### ◆ '98. 4. 1 이후 채무보증 변동 현황 ◆

(조원)

	'98. 4. 1 (A)	'99. 4. 1 (B)	'99. 6. 30	'99. 9. 30	'99. 12. 31 (C)	해소금액	
						A-C	B-C
보증금액 (보증비율) <sup>1)</sup>	26.9 (39.5%)	9.8 (9.7%)	7.7 (7.6%)	6.4 (6.3%)	4.3 (4.3%)	22.6 (35.2%p)	5.5 (5.4%p)
보증회사수	216	127	112	95	68	148	59

1)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

### ◆ 기업집단별 채무보증해소 현황 ◆

(조원)

	'98. 4. 1	'99. 4. 1	'99. 9. 30	'99. 12. 31	해소금액(해소율)	
					'98. 4월 대비	'99. 4월 대비
1~5대	11.1	2.3	1.3	0.9 <sup>1)</sup>	10.2(91.9%)	1.4(60.7%)
6~30대	15.8	7.5	5.1	3.4	12.4(77.8%)	4.1(54.7%)
합 계	26.9	9.8	6.4	4.3	22.6(84.0%)	5.5(56.1%)

1) 「대우」 제외시 0.2조원

워크아웃 약정이 대부분 체결된 대우그룹을 제외할 경우 2000년 1월 잔존 해소대상 채무보증액은 3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또한 공정위는 해소시한(2000년 3월말)까지 차질없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 채무보증잔액이 많

은 기업집단 및 금융기관과 구체적 해소계획에 대한 협의를 추진중이다. 특히 기한내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실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해소기한까지 수시 해소상황 점검 등 해소를 최대한 독려할 계획이다.

### ◆ 채무보증 변동 현황(제한대상) ◆

(단위: 억원)

기업집단명	'99. 04. 01 (A)	'99. 9. 30 (B)	'99. 12. 31 (C)	해 소 액		해소비율	
				D=B-C	E=A-C	F=D/A	G=E/A
현대	8,713	1,941	602	1,339	8,111	15.37%	93.09%
대우*	8,200	7,336	6,768	568	1,432	6.93%	17.46%
삼성	3,771	2,553	1,275	1,278	2,496	33.89%	66.19%
엘지	1,333	522	0	522	1,333	39.16%	100.00%
에스케이	858	141	0	141	858	16.43%	100.00%
5대 소계	22,875	12,493	8,645	3,848	14,230	16.82%	62.21%
한진	4,330	3,292	1,147	2,145	3,183	49.54%	73.51%
쌍용	7,496	5,461	4,687	774	2,809	10.33%	37.47%
한화	6,788	2,683	2,407	276	4,381	4.07%	64.54%
금호	3,490	2,578	2,058	520	1,432	14.90%	41.03%
롯데	2,363	1,106	448	658	1,915	27.85%	81.04%
동아	7,820	7,415	7,291	124	529	1.59%	6.76%
한솔	2,653	1,989	1,481	508	1,172	19.15%	44.18%
두산	1,607	1,365	840	525	767	32.67%	47.73%
대림	3,374	2,299	878	1,421	2,496	42.12%	73.98%
동국제강	1,701	667	534	133	1,167	7.82%	68.61%
동부	2,551	1,674	169	1,505	2,382	59.00%	93.38%
한라	4,590	3,835	11	3,824	4,579	83.31%	99.76%
고합	343	332	329	3	14	0.87%	4.08%
효성	664	645	639	6	25	0.90%	3.77%
코오롱	3,509	1,582	386	1,196	3,123	34.08%	89.00%
동양	1,728	767	562	205	1,166	11.86%	67.48%
진로	2,385	1,456	1,456	0	929	0.00%	38.95%
아남	3,856	3,674	3,629	45	227	1.17%	5.89%
해태	2,773	1,693	279	1,414	2,454	51.74%	89.79%
새한**	2,563	1,427	1,058	369	1,505	14.40%	58.72%
강원산업**	3,142	1,079	939	140	2,203	4.46%	70.11%
대상	451	207	170	37	281	8.20%	62.31%
제일제당**	1,108	959	512	447	596	40.34%	53.79%
신호	2,103	1,925	1,667	258	436	12.27%	20.73%
삼양**	1,601	912	684	228	917	14.24%	57.28%
6~30대	74,949	51,022	34,261	16,761	40,688	22.36%	54.29%
합계	97,824	63,515	42,906	20,609	54,918	21.07%	56.14%

\* 워크아웃 약정상 채무보증이 행정구권을 소멸시키로 되어 있어 2000. 1 현재는 대부분 해소됨.

\*\* 채무보증 해소기한의 종료일이 2001. 3. 31임.

# 대형할인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할인점들이 거래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신고 및 여론에 따라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까르푸, 월마트, 그랜드마트, 마그넷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형할인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번 조사는 1999년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의 기간동안 전국 12개 대형할인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11개 대형할인점들이 부당반품, 광고비 등의 납품업체 부당전가, 이익제공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어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단속 할 것이며, 앞으로 대형할인점의 반복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근원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 ◆ 세부 법위반 내용 및 관련업체 ◆

법위반 유형	건수	관련 백화점
• 부당반품	11	E-마트, 하나로마트, 월마트, 까르푸, 코스트코코리아, 마그넷, 그랜드마트, 한화마트, LG마트, 삼성태스코, 메가마트
• 광고비 등의 부당전가	2	까르푸, 월마트
• 이익제공 강요 위반 (특별장려금 등의 징수)	2	까르푸, 월마트
합 계	15	11개 대형할인점

## ◆ 업체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 ◆

업체명	법위반 유형		조치 결과
	건수	예시	
월마트	3건	부당반품, 비용전가, 이익제공 강요	시정명령, 신문공표, 과징금(175백만원)
까르푸	3건	부당반품, 비용전가, 이익제공 강요	시정명령, 신문공표, 과징금(245백만원)
마그넷	1건	부당반품	시정명령, 신문공표
그랜드마트	1건	부당반품	시정명령, 신문공표
한화마트	1건	부당반품	시정명령, 신문공표
LG마트	1건	부당반품	시정명령, 신문공표
하나로마트	1건	부당반품	시정명령
메가마트	1건	부당반품	시정명령
삼성태스코	1건	부당반품	시정명령
E-마트	1건	부당반품	경고
코스트코코리아	1건	부당반품	경고
11개 업체	15건	3개 유형	과징금(420백만원)

\* 경고사유:E-마트, 코스트코코리아는 반품소요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고 동 반품상품을 재매입함으로써 법 위반정도가 경미함

# 2000년 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2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상호출자금지와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등의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0년 1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9개사가 신규편입된 반면, 6개사가 계열제외 되어 2000년 2월 1일 현재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지난 2000년 1월 3일 570개사에서 573개사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업집단 규모별로는 1~5대 기업집단에서 1개사가 순증하고, 6대 이하 기업집단에서는 2개사가 순증하였다.

## ◆ 2000년 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2000. 1. 3	편 입				제 외				증 감	2000. 2.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기타		
전 체	570	8	1	-	9	3	2	1	-	6	3
1~5대	165	2	-	-	2	1	-	-	-	1	1
6~30대	405	6	1	-	7	2	2	1	-	5	2
											573
											166
											407

## ◆ 2000년 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

- ◎ 편입 : 9개사(지분취득 1, 회사설립 8)
- ◎ 제외 : 6개사(합병 3, 지분매각 2, 청산 1)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증 감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삼성	삼성톰슨 시에스에프(주)	기타정밀기기 제조업	회사설립	-	-	-	1
L G	(주)아워홈	급식사업	회사설립	호유대 운(주)	해상운송업	엘지칼텍스 정유(주)에 합병	0

구분	편입			제외			증감
	회사명	업종명	사유	회사명	업종명	사유	
쌍용	(주)텍스텍	섬유기계제조	회사설립	-	-	-	2
	(주)오산에너지	전기및가스	회사설립	-	-	-	
한화	한화에너지(주)	화력발전업	회사설립	-	-	-	2
	(주)에이치팜	의약품제조업	회사설립	-	-	-	
금호	-	-	-	금호고무(주)	타이어제조판매	아시아나공항 서비스(주)에 합병	△1
롯데	(주)롯데닷컴	전자상거래	회사설립	(주)디디비니드햄디 아이케이코리아	광고대행업	지분매각	0
대림	(주)아이씨티로	온라인정보제공 서비스업	회사설립	-	-	-	1
동부	-	-	-	동부한농종묘(주)	종자생산판매업	동부한농화학 (주)에 합병	△1
동양	씨네플렉스(주)	영상사업	지분취득	-	-	-	1
해태	-	-	-	(주)코래드	광고대행업	지분매각	△1
새한	-	-	-	디지탈미디어(주)	소프트웨어제조	청산종결	△1
계	9			6			3

## 회원사소식

## 신규회원사 소개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대표 민 해 영

서 비 스 업

중구 남대문로4가 45